

2025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1차

2025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4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산업계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을 통해 체계적 에너지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추진체계 및 용어정의

추진체계



| 총괄기관 | 사업 총괄 |
|-------|--|
| 운영기관 | 지원사업 추진 및 관리 총괄 ·사업운영, 홍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수행기관 관리 등 |
| 수행기관 | 운영기관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설치확인,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 |
| 지원사업장 | 지원사업 참여(수요기업) |
| 전문기업 | 에너지관리시스템 컨설팅, 시스템 구축 |
| 시공업체 | 계측 및 제어 인프라 구축 |

□ 용어 정의

- (지원사업장) 정부지원금 및 자부담금을 활용하여 소유관리하는 공장 등에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전문기업)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컨설팅 또는 에너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계·구축하는 기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시공기업) 제어·계측 설비 설치, 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설비별 또는 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3 지원 내용

□ 지원예산 : 정부지원금 5,500백만원

□ 지원대상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공고 첨부문의 <에너지사용량 산출 틀>을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에너지사용량신고서 또는 에너지비용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에너지사용량은 해당 사업장의 2023년 실적을 원칙으로 하며, 2024년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024년 기준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사업장 규모별 및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장 규모 및 에너지사용량별 지원기준>

| 구분 | 정부 지원 | 민간 부담 | 에너지사용량(toe) | 지원한도 (억원) | 비고 |
|----|-------|-------|--------------------|-----------|----------------------|
| 중소 | 70% | 30% | 500 이상~2,000 미만 | 1 | * 부가가치세(VAT) 지원사업장부담 |
| | | | 2,000 이상~10,000 미만 | 1.5 | |
| 중견 | 40% | 60% | 10,000 이상 | 2 | |

* 인프라 구축 비용은 계측기와 제어 및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에 한함(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등은 제외)

** KEEP30 참여기업 및 협력사, KEEP+ 선도기업의 경우, 에너지사용량에 관계 없이 사업비 최대한도(2억원) 내 지원 및 지원 비율 10% 상향(중견 40→50%, 중소 70→80%)

□ **지원내용** :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①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도입 컨설팅

- 기업의 에너지관리 현황 진단, 에너지 관리전략 수립, 에너지 절감 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 에너지관리시스템 절차서 작성(ISO 50001 표준 참조)
 - * PDCA사이클에 따라 전사적·지속적 에너지성과 개선을 위한 경영체계 구축
- 에너지사용의 효율화·최적화 방안 및 계측 포인트 선정 컨설팅
- 지원사업장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계측·제어·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 데이터 연계 방안 수립
- 구축된 계측·제어·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정상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관리·활용 방안 마련, 최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도
 - * 시스템구축 후 10일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너지절감 성과 또는 절감 잠재량을 파악하여 구체적 에너지절감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도출
- 지원사업 전·후 참여기업의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수준에 대해 진단·비교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성과점검 및 사업장의 지속적 에너지 효율화 추진 컨설팅

② 계측 인프라 구축

- 에너지사용량(전력량계, 유량계 등) 및 에너지사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영향인자(온도, 압력 등)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 설치
- 계측값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용 지원 및 계측 데이터 정합성 검토 등

③ 제어 인프라 구축

- 대상 설비에 적합한 에너지절감 제어 알고리즘 설계
- 에너지절감 제어기술을 적용한 장치, 설비 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 장치 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PLC·HMI·DCS 등의 연계를 위한 모듈 구성 및 자동·원격 제어 시스템의 통신 모듈(드라이버) 설치

- 단, 에너지비용만을 줄이는 기술(최대수요전력제어 등) 또는 단순 에너지 절감 기법(보온재 설치 등)은 본 사업의 제어 인프라로 인정되지 않음

※ 제어 인프라는 첨부 'EMS 활용 절감기법' 등을 적용하여 구축 가능하며, 제어 인프라에 의한 에너지절감량은 <에너지절감량 산정 틀>을 활용하여 타당하게 산정·제출되어야 함

※ 제어 인프라는 사업 후 에너지절감량이 계측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④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 에너지사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타 시스템(MES, ERP, 설비제어 등)과의 연계 및 활용 방안 마련
- 에너지성과지표의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원단위, 효율 등)
 - * 영향인자 계측기 설치 시 반드시 기능이 포함되어야 함
- 제어 대상설비의 최적값 입력 및 감시·관리 기능 구축
- 시스템 분석·설계, 구축, 기능 및 데이터 연동 테스트 비용지원, 교육 및 유지보수 방안 수립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4월 9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사업 신청(enms2025@energy.or.kr)

- 사업신청 이메일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사업 공고문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energy.or.kr>) - 국민소통 - 공단소식 - 공지사항의 「2025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

- 공단은 신청사업장이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공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업장에서 기한 내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원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5

선정 방법

- **사전검토** : 신청사업장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 공고에 따른 지원 조건 부합 여부 확인
 - 신청사업장이 다음 부적격 사항 해당 시 선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1)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2) 신청사업장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3) 신청사업장이 휴·폐업,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우
- 4) 신청사업장이 최근 연도말 부채비율 5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5)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6) 동일 설비 및 시스템에 대해 타 유사사업에서 중복으로 지원받거나 예정인 경우
- 7) 본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0조에 따른 조치를 받아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선정평가** : 사전검토가 완료된 신청사업장 대상으로 운영 지침 제 15조 1항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사업장의 수행책임자가 지정된 일자에 평가회의에 참석하여 사업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일자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평가 가능
 - * 평가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 평가 기준 및 배점은 [별첨 1] 지원사업 평가표 참고

- **사업선정** : 평가항목별 평점을 합산한 점수가 총점 70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고득점 순으로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 단, 과거 동 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잔여 예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평가점수 70점 이상 대상)
 - * 스마트에너지 FEMS보급지원사업, 산업단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 등
 - 선정사업장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 및 안내 예정

6

추진 절차

| No | 추진절차 | 추진주체 | 일정 | 세부 추진 내용 |
|----|---------------------------|----------------------|--------------------|--|
| 1 | 사업공고 | 한국에너지공단 | '25. 3월 | •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 2 | 사업 신청·접수 | 신청사업장→ 한국에너지공단 | ~'25. 4월 | •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접수 (이메일을 통한 접수) |
| 3 | 평가 및 선정 | 한국에너지공단 | ~'25. 4월 | • 사업계획·사업비 적정성 검토 • 평가·심의·선정(평가위원회) |
| 4 | 사전 협약 체결 | 참여, 전문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25. 5월 | • KEA·참여·전문기업(컨설팅, 시스템) 간 사전 협약 체결 |
| 5 | 사업비(선금) 지급 및 사전 컨설팅 수행 | 참여, 전문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25. 5월 | • 컨설팅·시스템 선금비율 20% 이내 • 사전 컨설팅 수행 |
| 6 | 최종 사업계획 제출·검토·확정 |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25. 7월 | • 사업계획 서면 검토 • 최종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 |
| 7 | 본 협약 체결 | 참여, 전문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25. 7월 | • KEA·참여·전문기업 간 사업 본 협약 체결 |
| 8 | 사업비(중도금) 신청·지급 |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25. 7월 | • 컨설팅·시스템 각 50%, 제어·계측 각 70% 이내 |
| 9 | 인프라 구축 업체 선정·계약 체결 | 참여기업↔ 시공기업(공사) 등 | ~'25. 8월 | • 민간조달(조달청)을 통한 구축업체 선정 및 계약 |
| 10 | 심층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 참여기업↔ 전문기업 | ~'25. 11월 | • 심층 컨설팅 수행 • 계측·제어·모니터링 구축 |
| 11 | 사업비(잔금) 신청 |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25. 11월 | •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설치 완료 보고서 제출 |
| 12 | 설치 현장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 ~'25. 12월 | • 완료 사업장 대상 인프라 구축 현장 확인 |
| 13 | 사업비(잔금) 지급 및 인프라 관리 |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25. 12월 | • 사업비 지급 및 취득 재산 관리대장 작성 등 |
| 14 |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 활용 | 참여기업↔ 한국에너지공단 | 종료 후 2년 종료 후 5년 | • 사업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현장실사 등)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 문의

- **사업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052-920-0393, 0394)
- **계약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
 -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문의(수요기관등록, 계약체결방법 등)

- 별 첨 1. 지원사업 평가 기준 및 평가표
2. 지원사업 사업 수행능력 계량 평가 및 가점 부여 기준
 3.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준
 4. 사업신청 제출 서류 목록
 5. 사업 변경 관련 단순·경미한 사항 기준
 6. 지원사업 추진 단계별 유의 사항
 7. 에너지흐름도 작성 지침
 8. 에너지계통도 작성 지침

<별첨 1> 지원사업 평가 기준 및 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 |
|-------------|--|---------------|-------------------------------|----|----|-----|
| 비계량 (75) | • 사업 목표의 적합성, 지원 필요성 등(30) | 우수 | 탁월 | 보통 | 미흡 | 저조 |
| | | 30 | 27 | 24 | 21 | 18 |
| | • 사업 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활용 가능성(30) | 우수 | 탁월 | 보통 | 미흡 | 저조 |
| | | 30 | 27 | 24 | 21 | 18 |
| | • 사업비 산출 내역의 적절성(10) | 우수 | 탁월 | 보통 | 미흡 | 저조 |
| | | 10 | 8 | 6 | 4 | 2 |
| | •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사업추진 역량(5) | 우수 | 탁월 | 보통 | 미흡 | 저조 |
| | | 5 | 4 | 3 | 2 | 1 |
| 계량 (25) | • 전문기업 참여 실적(10) | • 컨설팅 전문기업(5) | [별첨 1-1] 사업수행능력 계량평가기준에 따름 | | | |
| | | • 시스템 전문기업(5) | | | | |
| | • 컨소시엄 신용평가등급(15) | • 신청사업장(5) | | | | |
| | | • 컨설팅 전문기업(5) | | | | |
| | • 시스템 전문기업(5) | | | | | |
| 가점 사항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 | | 2점 |
| | • '23~'25년도 KEEP+ 선도기업 지정 사업장 | | | | | 1점 |
| | • KEEP30 참여기업 또는 KEEP30 협력사업장 | | | | | 1점 |
| | • 보급형 FEMS 표준플랫폼을 사용 중이거나 적용 예정인 사업장 | | | | | 1점 |
| | • '22~'24년도 산업진단보조사업 참여 사업장 | | | | | 1점 |
| 감점 사항 | • 본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비 정산, 반납 등이 완료되지 못한 '24년도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장 또는 전문기업 | | | | | -1점 |
| | • '24년도 사후관리 대상으로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 | | | | -2점 |
| | • '24년도 사업 선정 통보 이후 사업 수행을 포기한 사업장 또는 전문기업 | | | | | -2점 |
| |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수사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민사 상 소추되어 재판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전문기업 | | | | | -3점 |

* 가·감점의 경우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컨소시엄 내 2개 이상의 기업이 동일 감점 항목에서 감점을 받는 경우 중복 계산하지 않음

<별첨 2> 사업 수행능력 계량 평가 및 가점 부여 기준

□ (분야별 전문기업) 유사용역 실적평가(5점)

| 구 분 | 심사항목 | 배점 |
|--|-------------|-----|
| 최근 3년간 관련분야 용역실적 | 10건 초과 | 5.0 |
| | 6건 초과 ~ 10건 | 4.5 |
| | 3건 초과 ~ 6건 | 4.0 |
| | 3건 이하 | 3.5 |
| 1) 유사용역 범위 -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에너지경영컨설팅, 고효율설비 교체·구축,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구축 등 - 현재 진행 중인 용역실적도 인정 - 공동이행 방식으로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해당업체의 비율에 해당하는 규모만 인정 2) 실적증명 -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로 증명하여야 하며,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미제출된 실적은 불인정 - 전문기업이 다수인 경우 개별 실적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 |

□ (신청사업장, 분야별 전문기업) 경영상태 평가(5점)

| 신용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
| A- 이상 | A2- 이상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이상 | 5.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4.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4.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4.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 4.0 |
| B+, B0, B- | B- 이하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 3.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5 |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 | |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함
- 5) 전문기업이 다수인 경우 개별 경영상태 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가점 부여 기준(최대 5점)

| 구 분 | 제출 서류 | 증빙서류 발급 문의 | 가점 |
|--|--|-----------------------------|----|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등 | 2점 |
| • KEEP+ 선도기업 | • KEEP 선도기업 지정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 (☎ 052-920-0404) | 1점 |
| • KEEP 30 참여기업 및 KEEP 30 협력업체 | • KEEP 30 협약서 • KEEP 30 협력업체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 (☎ 052-920-0404) | 1점 |
| • 산업진단보조사업 참여기업 | • 산업진단보조 지원비용 지급 통지서 | 한국에너지공단 (☎ 052-920-0653) | 1점 |
| • FEMS 보급형 표준플랫폼 사용 또는 적용 예정 사업장 | • 산업통상자원부 보급형 표준플랫폼 개발 및 실증사업(R&D)을 통해 개발된 플랫폼에 한함 | (한국에너지공단 자체 확인) | 1점 |

* 가점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불가, 가점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첨 3>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준

□ 조치대상자

-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을 위반한 지원사업장, 전문기업 등 관련 기업, 대표자, 및 지원금 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 조치기준

| 구분 | 주요 위반사항 | 조치 기준 |
|----------|---|------------------------------|
| 사업 신청 | • 사업신청서 기타 제출 서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요 사실을 고의로 누락·조작한 경우 | • 사업 참여 제한 3년 이하 |
|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 사업 참여 제한 5년 • 지원금 전액 환수 |
| 사업 운영 | •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 사업 참여 제한 2년 이하 |
| | • 정부지원금을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고의로 유용, 횡령, 편취한 경우 포함) | • 사업 참여 제한 3년 • 지원금 전액 환수 |
| | • 지원사업장 또는 전문기업이 공단의 시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 • 사업 참여 제한 3년 |
| | • 지원사업장 또는 전문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 • 사업 참여 제한 3년 • 지원금 전액 환수 |
| | • 지원사업장 또는 전문기업이 사업 운영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행한 경우 | • 사업 참여 제한 3년 • 지원금 전액 환수 |
| 사후 관리 | •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지원금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 • 사업 참여 제한 2년 이하 |
| | • 구축 인프라를 당초 계획대로 운용 중이나, 연차별 사업 결과보고서(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 사업 참여 제한 2년 이하 |
| | • 운영 지침 제39조에 따른 지원금 반환 조치를 통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하지 않거나 이를 해태하는 경우 | • 사업 참여 제한 3년 |
| | • 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을 사업 종료연도 후 5년 이내에 공단 사전 승인 없이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폐기 처분한 경우 | • 사업 참여 제한 5년 • 지원금 전액 환수 |

<별첨 4> 사업신청 제출 서류 목록

□ 사업 신청 제출 서류(신청사업장)

| 순번 | 제출 서류 목록 | 비고 | 구분 |
|----|----------------------|-------------|------|
| 1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
| 2 | 사업비 산출 내역서 | [별지 제2호 서식] | 필수 |
| 3 | 지원사업 적격 신청여부 확인서 | [별지 제3호 서식] | 필수 |
| 4 | 지원사업 협약서 | [별지 제4호 서식] | 필수 |
| 5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 필수 |
| 6 | 에너지사용량 증빙자료 | | 필수 |
| 7 | 에너지사용량 산정 틀 작성본 | | 필수 |
| 8 | 에너지절감량 산정 틀 작성본 | | 필수 |
| 9 | 사업자등록증 | | 필수 |
| 10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필수 |
| 11 | 법인등기부등본 | | 필수 |
| 12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필수 |
| 13 |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 필수 |
| 14 | 법인 인감증명서 | | 필수 |
| 15 | 사용인감계 | | 필수 |
| 16 | KEEP+ 30 협력기업 확인서 | [우대사항 증빙자료] | 해당 시 |
| | KEEP+ 선도기업 지정 확인서 | [우대사항 증빙자료] | 해당 시 |
| | 산업진단보조사업 지원비용 지급 통지서 | [우대사항 증빙자료] | 해당 시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필수 서류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신청 제출 서류(분야별 전문기업)

| 순번 | 제출 서류 목록 | 비고 | 구분 |
|----|---------------|-----------------------------------|----|
| 1 | 사업자등록증 | | 필수 |
| 2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필수 |
| 3 | 참여인력증빙서류 | 재직, 경력, 학력, 자격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포함 | 필수 |
| 4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 필수 |
| 5 | 참여 실적 증명서 | [별지 제6호 서식] | 필수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필수 서류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별첨 5> 사업 변경 관련 단순·경미한 사항 기준

| 구분 | 항목 | 주요 내용 |
|---------------------|-----------------------|---|
| 공통 | 투입인력 변경 | • 동급 또는 그 이상 인력 투입 시 |
| 계측 인프라 | 계측기 위치 변경 | • 동일 부하의 계측기 설치 위치 변경 시 사업비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 | 계측 수량 변경 | • 사업비 변동없이 계측 포인트 증가로 인한 계측기 수량 증가 |
| | 계측기 등 H/W 사양 변경 | •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인 것이 증빙자료로 명확하게 증빙될 경우 |
| 제어 인프라 | 제품 사양 변경 | • 사업비 변동 없이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인 것이 증빙자료로 명확하게 증빙될 경우 |
| 에너지관리 시스템 인프라 | 제품 사양 변경 | •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인 것이 증빙자료로 명확하게 증빙될 경우 |

* 상기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별첨 6> 지원사업 추진 단계별 유의 사항

1. 지원사업장 사업 신청

-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컨설팅, 시스템 분야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컨설팅, 시스템 분야 전문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자격 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함(지원사업장에서 철저 확인)
- 사업의 신청은 업체 단위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여야 함
 - * 동일 업체 내 다수의 사업장이 신청하거나 사업장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
-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별지 제2호] 및 첨부 서류를 사업 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공단에 제출
- 사업의 선정 전 신청사업장, 시공기업 간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은 동 사업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향후 사업비 정산 시 동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 취소 및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공단은 신청사업장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제출자료의 사실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사업신청서 보완 등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사업장이 기한 내에 관련 조치 불이행시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사전 협약체결

- 지원사업장 평가 결과 선정된 지원사업장은 공단에서 별도 개별 통지함
- 지원사업장은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에 따른 사전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지원사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사전컨설팅 착수 신고 및 사업비(선금) 지급

-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은 본 협약이 체결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후 중도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은 선급금 신청 시 [별지 제10호]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서 및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지원금 지급보증보험증권과 전문기업이 지원사업장에게 제공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은 선급금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부담금을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의 사업비 전용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은 입금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공단은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의 사업비 전용 계좌에 자부담금의 납입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

4. 사전컨설팅 수행

-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은 사전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 기간 종료일 전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구축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후 최종사업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에너지관리시스템 사전컨설팅 지정된 사업기간까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단은 운영지침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5. 본 협약체결

- 지원사업장은 협약 체결 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한 [별지 제11호]에 따른 최종사업계획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단, 소요비용은 지원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함
- 공단은 위원회 검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원사업장이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총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공단은 확정된 최종사업계획과 지원금을 지원 사업장에게 통지하고, 지원 사업장은 [별지 제12호]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단과 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지원사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본 사업 착수신고 및 사업비(중도금) 지급

-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은 본 협약이 체결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후 중도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은 중도금 신청 시 [별지 제10호]에 따른 지원금 교부신청서 및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지원금 지급보증보험증권과 전문기업이 지원사업장에게 제공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은 중도금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부담금을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의 사업비 전용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은 입금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공단은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의 사업비 전용 계좌에 자부담금의 납입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원금은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

7. 시공업체 계약 방법

- 협약한 지원사업장은 제어·계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공기업과의 계약을 준비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업체 선정 추진
- 지원사업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 구 분 | | 자체조달* | 중앙조달** |
|--------|----------------------------------|---|--------|
| 물품, 용역 | ○ 2천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 ○ | ○ |
| 공 사 | 종합공사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
| |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 X |
| | 전문공사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 |
| |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 X |
| | 기 타 |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 ○ |
| | |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 X |

* 자체조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중앙조달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원사업장은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계약법령을 준용.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
- 지원사업장은 지원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원사업장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제 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은 전기공사,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전기공

사업법 제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 지원사업장은 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8. 인프라 구축 완료

- 지원사업장은 사업 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인프라(계측, 제어,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은 인프라의 구축 완료 후 [별지 제13호]에 따른 설치완료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설치확인을 받아야 함
- 공단은 제출된 설치완료보고서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에 따른 인프라 구축,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지원사업장은 설치확인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은 인프라 구축 완료 후 10일 이상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된 에너지·온실가스 절감효과, 설치확인 결과 등이 반영된 [별지 제14호]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 단, 절감효과 확인을 위해 추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공단은 1개월 이상의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음
- 전문기업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성과 점검을 위해 지원사업 전·후 지원사업장 스마트에너지팩토리 수준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공단은 제출된 사업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은 성과보고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9. 지원금(잔금) 지급

-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은 사업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10회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서 및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지원금 지급보증보험증권과 전문기업이 지원사업장에게 제공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
 - * 하자이행보증 요율은 총 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이상(보증기간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
- 공단은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설치완료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현장확인 후 적정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
- 既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는 지원금 중 선급금, 중도금을 제외하고 지급함
- 지원사업장은 잔금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부담금을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의 사업비 전용 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은 입금 증빙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공단은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의 사업비 전용 계좌에 자부담금의 납입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잔금은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에 직접 지급하여야 함

10. 사업비 관리

-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공고) 제23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고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은 지원금을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사업비는 동 계좌나 계정에 연결된 국고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공단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휴대폰 번호로 사업비 관리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실시간 문자통지서비스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사업 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용하는 것으로 함

11. 사업비 정산

-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은 사업 기간 종료일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공단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 정산을 실시해야 함. 이월된 사업의 경우 이월된 당해연도를 넘겨서 제출할 수 없음
 - *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87호)에 따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
- 정산 후 정산 잔액이 발생한 경우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은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잔액과 발생 이자를 구분하여 공단이 지정한 계좌(지원금 입·출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은 지원금 정산 반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음

12. 사후관리

- 지원사업장은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연도 이후부터 2년간 구축 인프라에 대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성과 활용 실적을 알 수 있는 성과 활용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매년 6월말까지)
- 전문기업은 사업종료 연도 이후부터 5년간 유지·보수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함(매년 6월말까지)
- 공단은 사후관리 의무기간(사업종료 후 5년간) 동안 사업장에 구축된 인프라의 현황 및 성과확인 등을 위해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행하며, 이 경우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은 공단의 사후관리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은 사후관리 의무기간 동안 취득한 인프라 등 중요재산에 대해 [별지 제20호]의 취득재산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별지 제21호]에 따른 인증 명판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 반기별로 공단에 관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이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 구축 인프라를 양도·폐기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3호]에 따른 재산처리 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을 득해야 함
- 지원사업장이 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설치 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단은 운영지침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은 이에 따라야 함

13. 사업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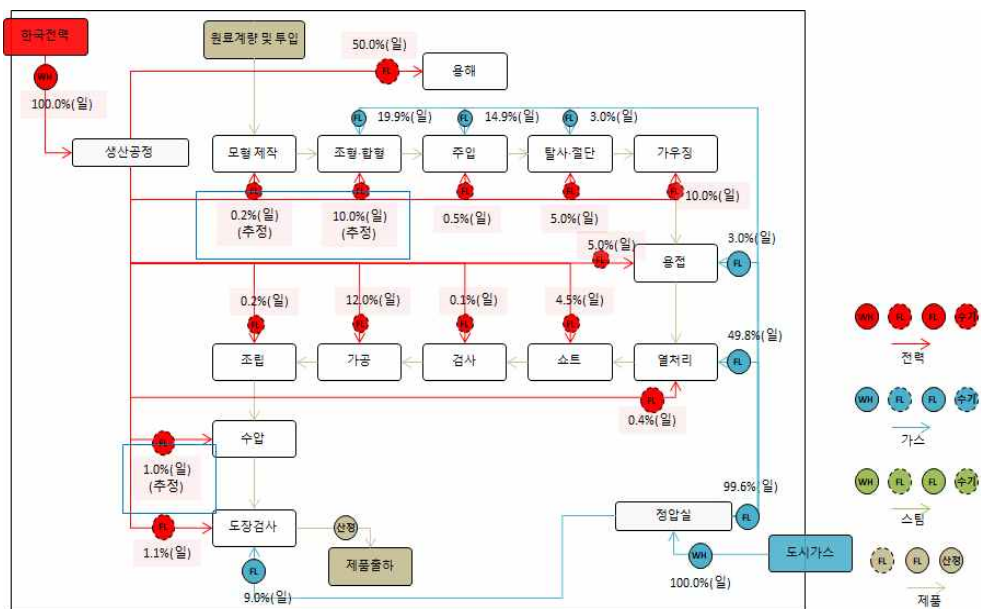
- 사업 승인 후 주요 설비 및 보조금 사용계획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중요 변경 사항 외 [별첨 5]에 따른 단순·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으로 공문에 보고
-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연 3회 이내의 범위에서 보고 기간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정하여 지원사업장 또는 전문기업에게 지원사업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 * 공단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지원사업장 또는 전문기업은 [별지 제17호]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에 필요한 요청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원사업장 또는 전문기업은 사업기간 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공단은 실시상황 보고 및 사고 보고 검토 결과, 해당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른 협약의 해약, 지원금 반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형자산의 소유권은 지원사업장에게 양도하고 지적 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공단과 지원사업장의 공동소유로 하며, 공단은 공익적 목적으로 본 지원사업의 무형적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지원금 지원 외에 컨설팅 추진결과, 지원사업장의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제품과 시공의 안전과 신뢰성, 기대효과 미흡, 자부담 금액 등의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은 정부 및 공단과 무관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공단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금만을 지원하며, 지원사업장과 전문기업, 시공업체 등 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산업계 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운영 지침」 등에 따름
- 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지원사업장 및 전문기업에게 있음

<별첨 7> 에너지흐름도 작성 지침

- 전체 에너지 사용설비의 용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전체 - 에너지용도별-에너지 사용설비별’로의 에너지 현황을 Block Diagram으로 작성한다.
-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예측값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량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EMS 준공 후 1년 미만) 동·하절기 중 1개월 이상, 중간기 1개월 이상의 예측 사용량을 기준으로 작성
예) 동절기 1, 2월 + 중간기 3, 4월의 요금고지서 대비 예측사용량 또는 하절기 8월 + 중간기 10월 요금고지서 대비 예측사용량 등
 - (EMS 준공 후 1년 이상) 연간(연속 12개월) 에너지 예측사용량을 기준으로 작성
-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예측값이 없는 경우 에너지 사용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전체 에너지 사용설비의 용량 또는 사용량을 100%로 하여 최종설비단 사용처의 합이 100%가 되도록 기재하고 각 단별로 사용 에너지원별 점유율을 표시한다.
 - * 단, 공정에 따라 예측되지 않는 설비가 있을 경우, 에너지사용량의 비중을 추정하여 작성하고, 합은 최대한 100%가 되도록 한다. (추정값일 경우 ‘추정’ 작성)
 - 에너지 사용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작성할 경우 ‘(1)건물의 전체 에너지사용설비의 용량’, ‘(2)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에너지 사용설비의 용량’을 기준으로 2개의 흐름도를 별도로 작성
- ‘전체-에너지용도별-에너지사용설비별’의 세부단위가 많아 한 도면으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전체-에너지용도별’, ‘에너지용도별-에너지사용설비별’ 등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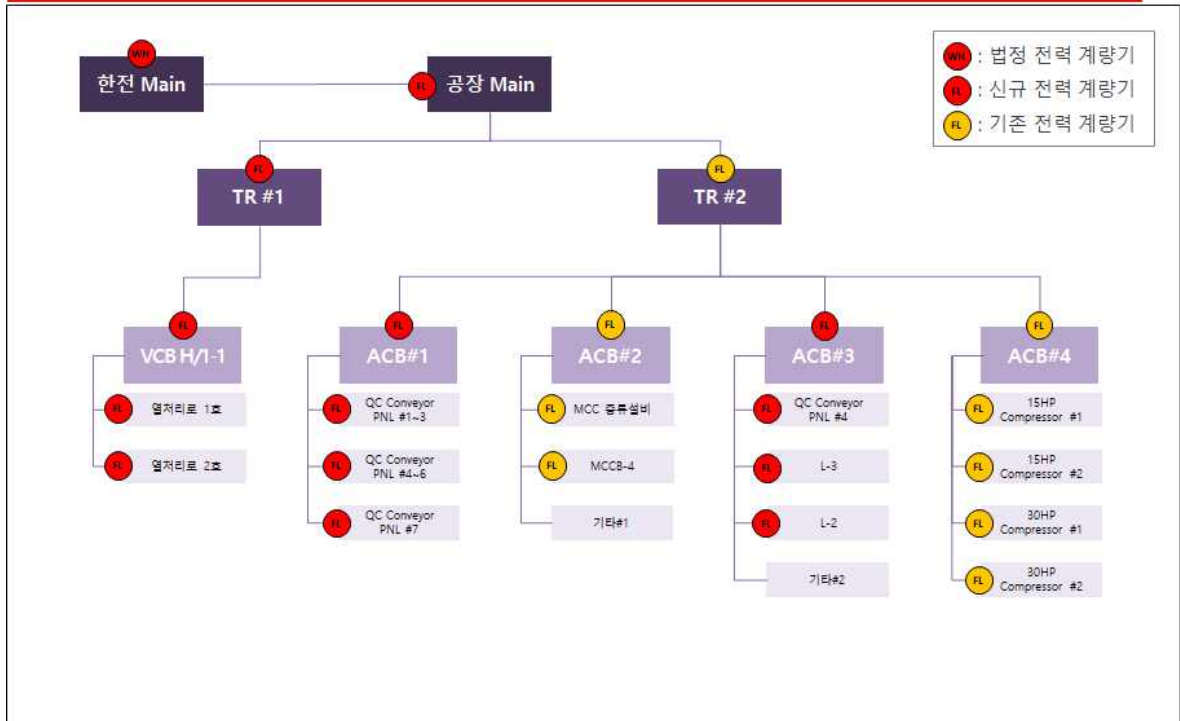


<에너지 흐름도(예)>

<별첨 8> 에너지계통도 작성 지침

- 전체 에너지의 물리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에너지원별 ‘Main - 상위분기 - 중간분기 - 에너지 사용설비’로의 에너지 계통 현황을 Block Diagram으로 작성
- 에너지원별 계통도 상에서 세부 에너지 사용 시설의 계측여부를 확인하고 분기 및 에너지 사용설비에 대한 계측 지점(검교정 여부 포함) 표시
- 계측기가 설치되어, 계측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계측기가 없더라도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모두를 계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 (국토교통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 8 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 제12조 참고)
- 에너지관리시스템에 연계되지 않은 계측지점은 계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에너지 사용비율이 전체 에너지 사용 대비 5% 미만의 범위 내의 시설들은 설비군으로 묶어 계통도 상 하나의 시설로 표시할 수 있다.
- 에너지계통도를 작성할 시, 싱글 및 멀티 계측기 수량, 관제점의 포인트 개수 및 본 사업을 통한 신규 구축 계측기의 수량을 작성한다.
- 에너지원별(전력, 연료, 스팀)에 따라 계통도를 구분하여 작성하며, 두 개 이상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설비는 별도로 설명을 작성한다.

● 모니터링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신규 전력 계량기는 00개이며, 총 00개 전력 계량기로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음
● 독립형 전력 계량기는 00개, 멀티형 전력 계량기는 00개이며, 관제점 총 00개로 관리하고 있음



<에너지 계통도(예)>